

제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14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143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19가단583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변론종결 2022. 4. 13.

판결선고 2022. 5. 25.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1. 선고 2019가단583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당사자 표시 부분의 원고 주소 중 “Z”를 “AA”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① 1999. 8. 13.경 양도약정 또는 ② 2009. 10. 21. 양도약정 또는 ③ 2012. 2. 28.경 양도약정 또는 ④ 2017. 2. 20.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7. 9. 12. 접수 제599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사정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①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3)항 1행의 “2012. 1. 18.경 양도약정”을 “2012. 2. 28.경 양도약정”으로, 4행의 “D가 2012. 1. 18.경”을 “D가 2012. 2. 28.경”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 1)항 표제 중 “M의”를 “D의”로, 같은 항 1행의 “M는”을 “D는”으로 각

고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 3) 가)항 1행의 “2009. 11. 6.사이에”를 “2009. 11. 6.까지 사이에”로 고치고, ④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 3) 나)항 3행의 “임대인” 바로 앞의 따옴표를 삭제하며, ⑤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 3) 다)항 1행의 ”입국하였는데“를 ”체류하였는데“로 고치고, ⑥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나.항 첫 번째 문단 13행의 ”갑자기“를 ”갑자기“로 고치며, ⑦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나.항 두 번째 문단 8행의 ”Y“를 ”A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임차인과 임대조건을 논의한다고 하며 임차인에게 보여줄 용도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를 양도약정이라고 볼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2021. 2.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 B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원고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문 당사자 표시 부분의 원고 주소 중 “Z”는 “AA”의 오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양순, 판사 이선희

별지